

CHAPTER 02

해양경찰 소관 법률

법률 (총 12개*)

* 단독 소관 해양경찰법 등 6개, 공동 소관
경찰공무원법 등 6개

해양경찰은 크게 해양주권 수호, 해양 안전 및 치안 확립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최근 해양경찰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법을 포함하여 해양 경비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 해양경찰 소관 단독법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961.11.1.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1999.2.8. 수상레저 안전법

2012.2.22. 해양경비법

2014.5.2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2020.2.21. 해양경찰법

2020.6.4.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공동 소관으로는 경찰공무원법, 경범죄처벌법, 경찰공무원 보건의안 및 복지기본법(경찰청 공동), 밀향단속법(법무부 공동),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국토부, 법무부, 해수부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행안부, 소방청 공동) 6개가 있다.

01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경위 박정식

해양경찰법



해양경찰법 해설서

1. 제정배경 및 목적

해양경찰은 1996년 경찰청으로부터 독립해 해양수산부 외청이 되면서 「경찰법」에 규정된 조직의 근거 조항이 삭제되었다. 해양에서 일반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조직과 직무에 대한 독자적인 법률이 필요하였으나 제정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해양경찰청은 「정부조직법」 제43조에서 규정한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라는 추상적이고 최소한의 임무를 근거로 활동하여 왔다.

해양치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해양안전이 더욱 강화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절실하였다.

이에 해양경찰청에서는 「해양경찰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 8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8월 20일 공포되었으며,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2. 주요 내용

(1) 해양경찰위원회 신설

국민으로 구성된 '해양경찰위원회'를 신설하여 해양경찰의 주요 정책과 제도개선에 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였다. 이는 해양경찰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의결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해양경찰의 정책은 잦은 조직개편과 지휘부의 변화로 인해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웠으나, 위원회가 신설됨으로써 중·장기적 틀 안에서 정책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위원회는 해양경찰 정책을 상시적으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환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양경찰 정책의 대국민 신뢰도를 한층 높여줄 것이다.

(2) 자체청장 임명 규정 마련

해양경찰청장 임명자격을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전·현직 치안감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체청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종전 해양경찰청장의 임명자격은 '경찰공무원'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청장은 해양경찰보다 인력풀이 많은 경찰청 출신으로 임명되었다.

이로 인해 해양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휘부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고, 해양에

국민의 해양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 ‘해양경찰법’에 대해 알아보기

서의 실전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체청장 임명이 절실하였다. 이 법을 통해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 출신으로 임명하게 되면서, 국가적 재난 시 신속·정확한 판단력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며, 조직원들에게도 청장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게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도 한층 제고될 것이다.

(3) 해양경찰 고유의 직무 정립

해양경찰이 실제 수행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직무를 나누어 알 수 있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의 추상적인 직무 근거만을 두고 있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해양경찰의 직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없었다.

특히, 해양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기관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작용법 뿐만 아니라 조직법적 근거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해양경찰법」이 제정됨으로써, 해양영토 수호, 연안안전관리, 수색·구조, 해양관련 범죄수사와 치안정보 수집,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 국제 협력 분야 등 다양한 해양경찰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책임과 역할을 정립하는 한편 조직의 정체성도 확보하게 되었다.

(4) 해양안전 확보

해양경찰은 국내 유일한 해양종합 치안기관으로,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구조책임을 갖고 있다. 최근 국민의 안전에 대한 눈높이는 높아져가고 있으며, 해양경찰은 이러한 국민눈높이에 맞는 해양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 법에 해

양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해 규정하였다.

해양경찰이 해양구조방식 및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의무화하였고, 해양사고 대응을 위해 지휘·통신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양사고는 광범위한 구역에서 발생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민·관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해양경찰은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을 통해 해양안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보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의 바다는 더욱 안전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5) 연구개발의 지원

해양경찰은 창설 당시 어업자원 보호업무로 시작하였으나, 직무가 점차 확장되어 해양종합치안기관으로 발전하였다.

앞으로 미래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해양경찰의 업무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였다. 이로 인해 해양경찰의 미래 직무영역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빈틈없이 해양주권과 안전을 수호하는 해양경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수색구조과 경위 이준택

0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및 주요 개정사항

(법률제정) 1961년 11월 1일 조난선박과 인명의 구호 및 표류물·침몰품등의 인양과 이에 수반한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난구조업무에 신속·적절한 처리를 기하며 인명·재산을 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난구조법」을 제정되었다.

(전문개정) 이후, 경제규모의 확대와 국제화로 해상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난사고가 빈발하고 대형화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인 수난구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조난된 사람과 선박 등을 신속히 구조하여 인명과 재산의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고, 해운선 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범세계적인 수난구조체제에 동참하기 위하여 1979년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해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SAR)에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이 법에 수용하기 위해 1994년 12월 22일 전문개정 되었다.

(제명변경)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의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조치 실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구조본부장의 안전조치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고, 조난된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에 대한 구조 의무를 명시 하였으며 해수면과 내수면을 포함하는 용어로 “수상”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법률 제명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다.

2. 주요내용

(1) 용어의 정의

- ① 수상 :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 해수면 : 바다의 수류나 수면
 - 내수면 :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
- ② 수난구조 :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
- ③ 조난사고 : 사람의 익수·추락·고립 등의 사고와 선박의 침몰·좌초·전복·충돌 등으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
- ④ 수색 :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
- ⑤ 구조 :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등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과 선박 등을 신속히 구조하기 위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2) 해양재난에 대한 해양경찰의 역할

- ① 중앙구조본부 : 해수면 수난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수난구조협력기관·민간단체 등의 수난구조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통제 및 수난구조활동의 국제적인 협력(제5조)
- ② 광역·지역구조본부 : 해역별 수난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해당지역에 수난구조활동의 역할 조정과 지휘·통제
- ③ 수난대비기본계획 : 해양경찰은 해수면에서 자연적·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난구조를 위하여 수난대비기본계획 수립

(3) 수난구조

- ① 수난구조의 관할 : 해수면에서의 수난구조는 구조본부의 장(해양경찰)이 수행하고 내수면에서는 소방관서의 장이 수행
- ② 구조본부 등의 조치 : 조난사실을 신고 또는 통보받거나 인지한 관할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은 구조대에 구조를 지시 또는 요청하거나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 등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등 수난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현장지휘 : 조난현장에서의 수난구조활동의 지휘는 지역구조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행한다.
- ④ 구난작업 : 누구든지 조난된 선박 등을 구난하려는 자는 구난작업을 하기 전에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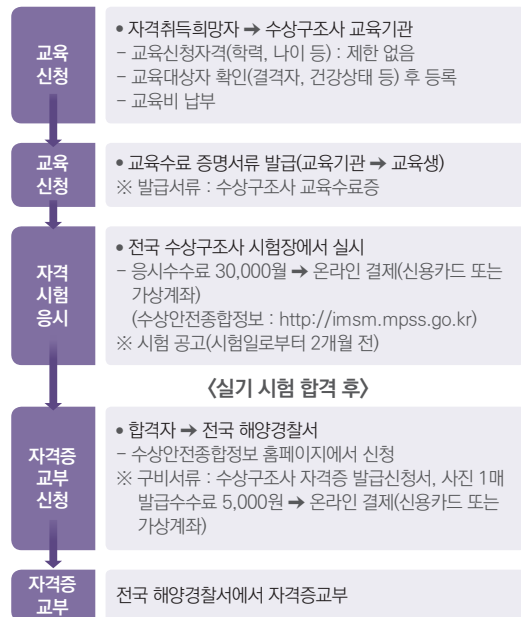
(4)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 ① 수난구조를 위한 종사명령 : 수난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조에 종

사하게 하거나 선박, 자동차 토지 건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민간해양구조대원 :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
- ③ 수상구조사 :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자격 부여

〈수상구조사 자격취득절차〉



(5) 사후처리

- ① 구조된 사람·선박·물건 : 구조본부장은 그 신원을 확인하고 보호자 또는 유족에게 인계하고, 선박 물건 등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소유자에게 인계
- ② 구조된 사람의 보호 : 구조된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등에게 신속히 숙소·급식·의류의 제공과 치료 등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의 조치

03

수상레저과 경위 이재진

수상레저안전법

1. 제정이유 및 주요 개정사항

(법률제정)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수상레저활동의 다양화로 수상레저 인구가 급속히 증대됨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 대한 면허제도,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준수의무, 수상레저사업자의 등록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전문개정) 이후, 주 5일 근무제의 확대시행과 더불어 수상레저활동의 대중화로 수상레저기구와 수상레저활동자는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으나, 개인소유의 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체계가 전혀 없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등록 및 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상레저기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기존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5년 3월 31일 전문개정 되었다.

2. 주요내용

(1) 용어의 정의

- ① 수상레저활동 :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 ② 수상레저기구 :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수상스키, 카약, 카누 등을 규정
- ③ 동력수상레저기구 :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레프트 등을 규정
- ④ 수상 : 해수면과 내수면
- ⑤ 해수면 : 바다의 수류나 수면
- ⑥ 내수면 :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모터보트



세일링 요트

(2) 조종면허

- ① 면허대상 :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 ② 종별구분 : 일반1·2급면허, 요트면허
- ③ 취득방법 : 필기·실기시험, 조종면허 시험 면제교육(36~40시간)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3)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준수의무

- ① 안전장비착용: 수상레저활동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워터슬레드 및 레프팅의 경우 구명조끼에 안전 모까지 착용해야 함
- ②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해양경찰관서 등에 신고해야 함
- ③ 야간수상레저활동의 금지: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한다. 다만, 야간항해장비(10종)를 비치할 경우는 가능함
- ④ 주취운항금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은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아니됨

- ⑤ 정원초과금지: 안전검사시 산정된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는 것은 금지함

(4)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 ① 안전관리계획 수립: 해수면의 경우 해양경찰서장, 내수면의 경우 시·도지사
- ② 레저활동금지구역 지정: 해수면의 경우 해양경찰서장, 내수면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 ③ 시정명령: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을 위한 일시 정지, 수상레저기구 개선·교체요구
- ④ 관계행정기관 협조: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내수면 안전관리 지원
- ⑤ 수상레저안전활동협의회 구성: 시·도지사·지방해양경찰청간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위한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5)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및 등록

- ① 검사·등록대상: 모터보트·세일링요트(20톤미만), 고무보트(30마력이상), 수상오토바이
- ② 검사주체: 개인용의 경우 해양경찰청장, 사업용의 경우 해수면은 해양경찰청장, 내수면의 경우 시·도지사
- ③ 검사내용: 기구의 크기 측정, 승선정원 산정 및 안정성 등 확인(신규·정기임시검사)
- ④ 검사주기: 개인용(5년), 사업용(1년)

(6) 수상레저사업

- ① 등록절차: 해수면의 경우 해양경찰서장, 내수면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 ② 안전점검: 해양경찰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기구 및 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인
- ③ 안전준수 의무부과: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 기구, 시설 및 수상상태 점검 등

04

경비과 경감 김기태

해양경비법

1. 제정배경 및 목적

급변하는 해양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해양 안보를 수호하고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활동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해양경찰활동의 수행을 위한 해상검문검색, 선박 등의 추적·나포,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의 대상 및 발동요건을 구체화하며, 해양경찰관이 사용 가능한 장비와 장구 등을 명시하여 해양경찰활동이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는 한편, 육상에서의 공공질서 및 치안의 확보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활동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해양경비 업무수행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에서의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해양경비법」이 2012년 8월 23일에 제정되었다.

2. 주요 내용

(1)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권한 명문화

「해양경비법」은 해양범죄에 대한 예방, 해양오염 및 해양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 해양경호·대테러 및 대간첩작전 수행, 해양시설의 보호에 관한 조치,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 그 외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해양경찰관의 직무로 규정하였다.

(2) 해상에서의 선박검문검색제도 도입

법령이나 조약을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선박 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상검문검색 시에 선장에게 담당 해양경찰관의 신분과 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도록 해상검문검색의 대상,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였다.

- ①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진로 등 항행상태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항법을 이탈하여 운항되는 선박 등
- ② 대량파괴무기나 그 밖의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 등
- ③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 조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 등

(3) 선박 등에 대한 추적 및 나포

해양경찰에게 추적, 나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추적, 나포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아울러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이하 「유엔해양법협약」이라 한다)을 준수케 하여 국제적인 분쟁에도 대비하였다.

해양에서의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해양경비법

(4) 해상항행 보호조치에 대한 제재 수단 신설

해상항행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포구, 임해 중요시설 1km 이내 등에서 해상집단행위를 하는 선박 등의 선장들에 대해 경고, 이동·해산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무기 사용에 대한 요건 등 법적 근거 마련

해양경비 활동 중 선박 나포와 범인의 체포, 선박과 범인의도주방지 등을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기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특히, 선박 등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할 경우와 대간첩·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공용화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개인화기 사용요건

- ① 선박등의 나포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경우
- ② 선박등과 범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 ③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 ④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억제하기 위한 경우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 사용요건

- ①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 ② 「해양경비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선박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하려는 경우
- ③ 선박등이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벌금)

위반행위	벌칙(벌금)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4조에 따른 이동·해산·피난 명령 또는 이동·피난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테러 훈련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05

해양안전과 경감 오명용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1. 제정배경 및 목적

2013년 7월 18일 태안군 백사장 해수욕장에서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에 참여한 학생 중 5명이 파도에 휩쓸려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이를 계기로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사회전반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 21일에 제정되었다.

2. 주요 내용

(1) 연안사고 등 용어의 정의

- ① 연안해역 : 해안가, 방파제 등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지역(무인도서 포함)
- ② 연안사고 : 연안해역에서 익수·추락·고립 등 사고 및 연안체험활동 중 발생한 사고
- ③ 연안체험활동 : 스노클링, 스킨스쿠버 등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수상형



수중형



일반형

(2)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수립 등

「연안사고예방법」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관계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 고위공무원이 참여하는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제8조)”의 의견을 들어 연안사고예방 정책 기본방향·체계·대책 등을 포함한 「제2차 연안사고예방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안사고예방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3)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해양경찰은 소방청장, 지자체장,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행(제9조)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① 위험성조사·평가를 통한 위험구역 지정·관리 ② 인명사고 발생 및 우려지역 출입통제장소 지정 ③ 기상특보 등 사고위험요소 발생 시 위험예보제 실시 ④ 위험구역 내 표지판·구조함 등 안전관리시설물 설치·관리 ⑤ 연안해역 안전점검 실시 등으로 해양경찰과 지자체장 등 관련기관은 위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연안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4)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안전하고 즐거운 연안체험활동을 위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① 안전교육 이수(운영자, 안전관리요원) ② 안전요원 및 안전장비 배치기준 등 준수 ③ 연안체험활동 신고 및 보험 등의 가입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은 연안체험활동 장소의 안전점검 및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자연재해 예·경보 발령 등) 연안체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3. 안전한 연안활동을 위한 준수사항

(1)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이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은 연안체험활동 실시 전에 유형별 해당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 연안체험활동의 신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안체험활동 종합시스템 또는 문서로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기간제, 건별)하여야 한다. 단, ① 수중레저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②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 제외) ③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수가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안전관리요원 및 안전장비 배치 등 안전수칙 준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및 안전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4) 보험 등의 가입

수상형·수중형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출입통제장소 출입금지

「연안사고예방법」 제10조에 따라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연안해역에는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4. 벌칙 및 과태료

위반행위	벌칙(과태료)
법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법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조 1항에 따른 출입통제장소에 출입한 자	

06

해상교통관제과 7급 이상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1. 제정배경 및 목적

선박교통관제(VTS: Vessel Traffic Service)란 선박교통의 안전 및 효율성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선박의 동정을 관찰하며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 및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20년 기준, 부산 등 15개 항만과 경인연안 등 5개 연안해역, 총 20곳에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과거 법 체계를 보면 「해사안전법」과 「선박입출항법」에 시행근거 등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 운영규정은 행정규칙에 의존하고 있었다. 또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법률 소관 기관은 해양수산부, 그리고 집행기관은 해양경찰청으로 서로 달라 국내 관제 환경변화에 맞도록 적기에 법률 개정과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선박교통관제의 해양사고 예방 기능 강화와 체계적인 정책 수립 등을 위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약칭 선박교통관제법)」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20.6.4.)

2. 주요내용

(1) 선박교통관제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동 계획에서는 선박교통관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선박교통관제의 운영·시설 구축, 교육·훈련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다.

(2) 선박교통관제 시행과 관제대상선박 등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주체를 해양경찰청장으로 명시하고 선박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관제사의 업무와 그 관제에 따라야 하는 선박과 선장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

관제사의 업무

1. 관제구역 내 선박에 대한 관찰확인·안전정보 제공·조언·권고 또는 지시
2.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정보 및 기상 특보 등의 제공
3.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선박 입출항 신고접수·선석·정박지·도선·예선 정보 등 항만운영 정보의 제공
4. 무역항 질서 단속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선박 출항통제 관련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선박교통안전과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안전한 해상교통을 확립하기 위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관제대상선박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
3.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4. 그 밖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특성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선박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의무

1. 선장은 관제에 따라야 함(단, 선박의 안전을 위해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2.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3. 선장은 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 선박교통관제센터에 신고
4. 선장은 관제구역 내에서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를 갖추고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단, 통신장애로 불가할 경우 휴대전화 등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고 가능)
5. 선장은 선박교통의 안전위해 요소를 발견한 경우 선박교통관제센터에 신고

(3)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및 교육

선박교통관제는 항만 및 연안해역의 선박교통 환경, 선박의 조종특성, 해상통신영어, 해양기상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무이다. 따라서 본 법에서는 관제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관제사 육성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4) 관제시설의 설치·관리 및 기술기준

선박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제사의 논의 역할을 하는 레이더, 입과 귀의 기능을 하는 무선전화 등 다양한 시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법에서는 안

정적인 관제업무 수행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국내법과 국제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관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5) 선박교통관제 연구개발 지원 및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

선박교통관제는 본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해양경찰청)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민간에서의 수요가 많지 않고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가 작아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법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이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를 설립하고 관제업무, 관제사의 교육훈련·평가, 사고예방, 관제 관련 제도 개선 등 해양경찰청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선박교통관제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4. 벌칙 및 과태료

위반행위	벌칙(과태료)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법 제14조 제4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4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관제대상선박의 신고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않은 경우	